

제출서류

- ▶ **공통**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홈페이지(swcall.co.kr) 서식다운)
- ▶ **추가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 노약자 : 장기요양인정서
(타지역 : 입소,입원확인서)
 - 임산부 : 진단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신청서 접수처

-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접수
 - 대표전화 : 031) 253-5525
 - 팩스번호 : 031) 240-2749
 - 전자우편 : swcall@suwonfmc.or.kr
- ▶ **접수장소**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조원동)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내)

신청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통보방법 : 구술 · 전화 · 팩스 · 인터넷 등

이동지원센터 위치도



특별택시



일반택시



수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한아름콜택시

253-5525



수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수원시에서는 행동이 부자유로운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수원시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원택시(주)**가 주축이 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싣고 달리는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복지 서비스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까운 이웃중 이동에 불편한 분이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 **031-253-55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행동상의 부자유함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와 혼자서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가 있습니다.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65세이상의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3등급 이상에 해당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할 경우 이용 가능

※ **상기 이용대상자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운행안내

운행택시

- 특별택시(휠체어탑승설비장착차량) 48대
- 일반택시 50대

운행시간

- 특별택시 : 연중무휴(365일, 24시간)
- 일반택시 : 연중무휴(365일, 06:00~24:00)

운행지역

- 수원시 관할구역
(단, 병원 치료목적에 한하여 경기도, 서울지역 가능)
※ 관외 병원이용시에는 의사처방전 또는 진료기록 증빙서 사본 제출
- 인근지역(용인·화성·오산·안산·의왕·안양·군포)
-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운행요금

- 수원시내 : 1,100원
- 관외 : 1km마다 100원 추가 적용

이용방법

- 제반서류 제출후 전화예약
- 택시별 이용요령

차종별	예약여부	예약방법	접수시간
특별택시	예약 + 즉시 모두 가능	전화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이용일 7일전부터 이용 전일까지 • 즉시:이용일 20~30분전
일반택시	즉시이용만	전화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20~30분전

